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 주민투표, 주민조례청구, 감사, 주민소송,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1
1.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4
1.1. 지방자치의 이해 4
1.1.1. 지방자치 알아보기 4
1.2. 주민의 권리 6
1.2.1. 주민의 정치참여 6
2. 주민투표권 9
2.1. 주민투표의 이해 9
2.1.1. 주민투표 알아보기 9
2.2. 주민투표 청구 10
2.2.1.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10
2.2.2. 청구절차 13
2.3. 주민투표 실시 15
2.3.1. 주민투표운동 15
2.3.2. 투표방법 17
2.4. 주민투표 결과 18
2.4.1. 개표방법 및 확정 등 18
3. 주민조례청구권 20
3.1. 주민조례청구권의 이해 20
3.1.1. 주민조례청구권 알아보기 20
3.1.2. 주민조례청구 절차 22
3.1.3. 주민조례청구 결과 26
4.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28
4.1. 주민감사청구권의 이해 28
4.1.1. 주민감사청구권 알아보기 28
4.1.2. 감사청구 절차 30
4.1.3. 감사청구 결과 32
4.2. 주민소송의 이해 33
4.2.1. 주민소송 알아보기 33
4.2.2. 주민소송 제기권자 및 청구요건 34
4.2.3. 주민소송의 진행 36
4.2.4. 주민소송의 결과 36
5. 주민소환 38
5.1. 주민소환의 이해 38
5.1.1. 주민소환 알아보기 38
5.2. 주민소환투표 청구 38
5.2.1.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38
5.2.2. 주민소환 청구절차 40
5.2.3. 청구결과 43
5.3. 주민소환투표 실시 44
5.3.1. 주민소환투표운동 44
5.3.2. 투표 46
5.4.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47
5.4.1. 투표결과의 확정·이의신청 47

1.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1.1. 지방자치의 이해

1.1.1. 지방자치 알아보기

지방자치의 개요

지방자치의 개념

-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나아가 국가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광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합니다(「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2항).

사무의 종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주민등록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농업자재의 관리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농가 부업의 장려 -공유림 관리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자연보호활동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국제교류 및 협력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제116조).

지방의회의 사무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며,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7조, 제47조 및 제49조 참조).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상호견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제3항).

√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제4항).

1.2. 주민의 권리

1.2.1. 주민의 정치참여

주민의 정치참여

주민의 개념

▪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참조).

주민의 정치참여 보장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3항).

▪ 한편,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투표,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 본 콘텐츠에서는 주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국민'으로서의 주민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선거권자(유권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정치참여 방법

구분	주민투표	주민조례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청구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시·도: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시·도의회의원 등 제외)
청구권자	-주민 (18세 이상)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18세 이상)	주민(18세 이상)	감사청구한 주민(18세 이상)	주민(19세 이상)
제한 사항	선거일전 60일~선거일까지 서명 불가	선거기간 서명요청 금지	사무처리 일부터 3년 경과 시 제기 불가	주민소송 중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주민소송 제기 불가	선거일전 60일~선거일까지 서명 불가
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상급기관 (감사청구심의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명: 소환투표대상자
청구 후	투표실시 (공고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 발의 (30일 이내)	감사실시 (60일 이내)	주민소송 진행	투표실시 (공고일부터 20~30일)
확정	과반수 득표시 확정	의결	감사종료 및 공표 (통지)	법원결정 및 심리 후 판결(3심제)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시 확정
결과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청구대표자	-청구대표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 승소 시 실비 청구 -지방자치단체장: 확정판결조치의무, 손해배상 청구, 변상명령	·직상실(결과공표 시점) ·중앙·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청구인 대표자, 당사자에게 통지
이의 불복	-소청 및 주민투표소송 -재투표			미지불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민소환투표소송 -재투표

2. 주민투표권

2.1. 주민투표의 이해

2.1.1. 주민투표 알아보기

주민투표의 의의

주민투표의 개념

▪ "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투표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본문).

-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단서).

-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선거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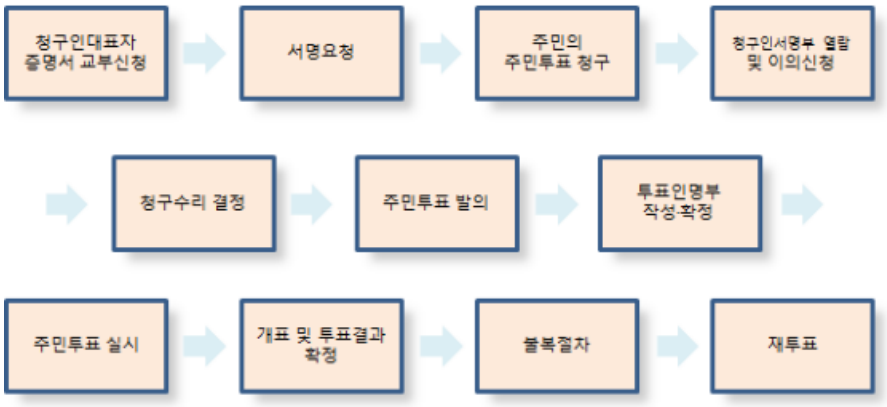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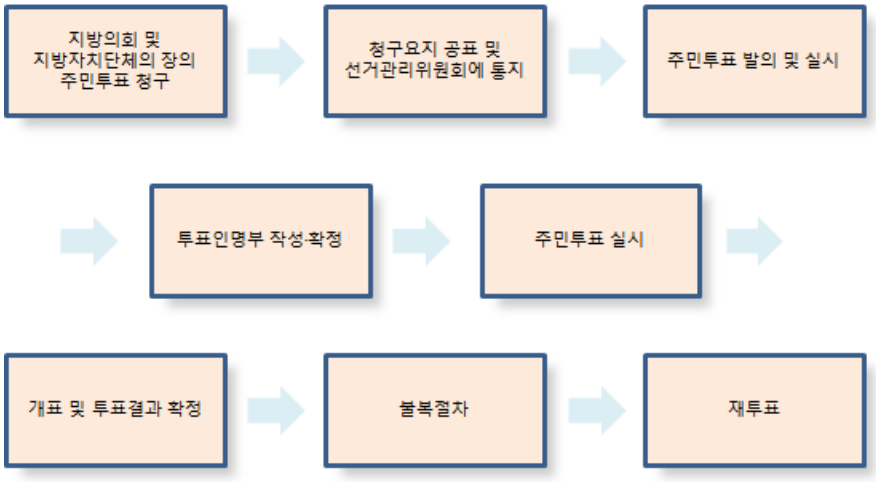
주민투표 유형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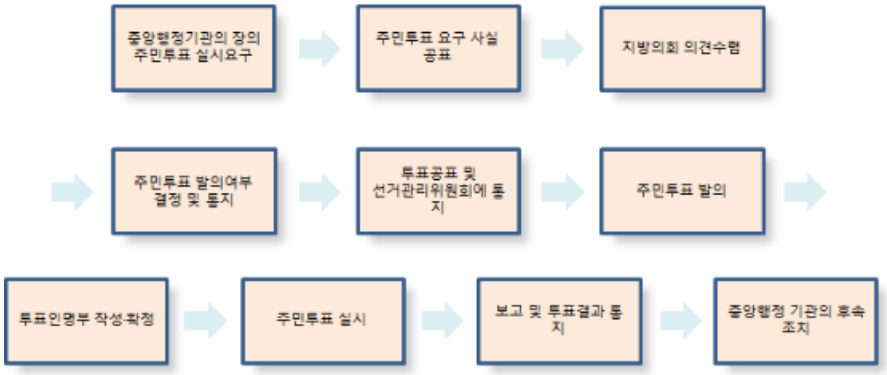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1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주민투표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5면>

국가정책에 의한 주민투표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6면>

2.2. 주민투표 청구

2.2.1.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주민투표

지방의회에 의한 청구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청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제3호).

주민투표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제외함)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2항 본문).

>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주민투표 발의 이후의 내용은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와 같으며, 이 사이트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주민투표 실시)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

▪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3항).

주민투표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제1호).

>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발의 이후의 내용은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와 같으며, 이 사이트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주민투표 실시)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자문형 투표'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실시구역·투표결과의 확정·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무·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의 변경 또는 새로운 결정·투표소송·재투표·투표연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27면 참조).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 18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청구인대표자 선정

▪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후단).

▪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 전단·제5항제1호·제2호).

-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청구요건

▪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주민투표 대상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

주민투표 제외 대상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사항

  √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 **Q. 주민이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 A.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민은 실시구역을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37면 참조>

2.2.2. 청구절차

서명요청활동

서명요청

▪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전단).

> ※ 청구인서명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함)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4항).

▪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5항).

-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철회하려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해야 하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6항)

▪ 위에도 불구하고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철회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7항).

> **Q.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몇 명까지 위임할 수 있나요?**
>
> A. 「주민투표법」에서는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수적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37면 참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

  ※ 이 기간은 서명운동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후단).

- 공무원(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11조제2항).

- 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11조제3항).

청구인서명부 심사절차

청구인서명부 제출

-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함)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10일
  - 시·군 또는 자치구: 5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무효로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서명
  -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해졌거나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해진 서명
  -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행해진 서명
  - 「주민투표법」의 위임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청구인서명부 공개 및 이의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함)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안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6항).

청구인서명부의 보정 및 각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에게 해당지역 조례가 정하는 기간 안에 보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8항).

- 유효한 서명의 총수(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가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서명요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 **Q. 서명 당시에는 19세 미만이었지만, 청구인서명부 제출 시에는 19세가 되는 주민의 서명은 유효한가요?**
>
> A.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효합니다.
>
> **Q. 청구인서명부 심사때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이 무엇인가요?**
>
> A.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이란 본인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
>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43면 참조>

청구인서명부 심사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투표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제외함)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2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3항).

2.3. 주민투표 실시

2.3.1. 주민투표운동

주민투표운동의 의의

주민투표운동의 개념

▪ "주민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 단서).

주민투표운동권자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21조제2항).
  -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통·리·반의 장

위반 시 제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2호).
  - 주민투표운동기간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경우
  -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한 경우

주민투표운동의 제한

주민투표운동의 제한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1항·제2항).
  -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금지되는 시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주민투표운동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 **Q.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방송광고, 설명회 등을 통해 특정안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정보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정보의 제공과 주민투표운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
> A. 특정안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은 그 특정안을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일방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경우에는 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
>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56면 참조>

2.3.2. 투표방법

주민투표 실시구역

실시구역

-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단서).

- 청구인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제3항).

주민투표의 투표일

투표일

-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함)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1항).

- 위에 따른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3항).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4항 본문).

  ※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4항 단서).

주민투표 투표방법

투표방법

- 주민투표의 투표방법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합니다(「주민투표법」 제15조).

- 주민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투표법」 제18조).

  -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른 기표방법에 따른 투표
  -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함

-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됨

전자투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투표(이하 ""전자투표""라 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 참조).

- 청구인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참조).

-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전자투표의 방법
-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2.4. 주민투표 결과

2.4.1. 개표방법 및 확정 등

주민투표의 개표

주민투표의 개표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단서).

-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에 미달되는 경우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주민투표의 확정

주민투표결과 확정의 효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6항 본문).

※ 다만,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6항 단서).

주민투표결과의 이의신청 및 재투표 등

소청 및 주민투표소송

▪ 주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청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5조제1항).

-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군·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 위의 소청인이 소청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5조제2항).

- 시·도: 대법원
- 시·군·구: 관할 고등법원

재투표 및 투표연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안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

▪ 재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해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6항).

3. 주민조례청구권

3.1. 주민조례청구권의 이해

3.1.1. 주민조례청구권 알아보기

조례의 개념

조례의 개념

▪ “조례”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

▪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

▪ 시·군 및 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의 조례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법」 제30조).

> ※ **조례의 효력**
>
> ·조례는 법령과 같이 공표·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짐
>
>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짐
>
>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9면 참조>

주민조례청구권의 의의

주민조례청구권의 개념

▪ “주민조례청구권(조례개폐청구권)”이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이하 ‘조례개폐’라 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58면 참조).

주민조례청구 절차도



<출처: 행정안전부, 『2025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11면>

주민조례청구권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구권자"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권자의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산정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를 선정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

▪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공직선거법」 제18조).

-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주민조례청구 요건

청구 가능한 주민 연대 서명의 수

▪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3.1.2. 주민조례청구 절차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 선거권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하 "청구권자"라 함)이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함)
-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함)

※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발급취지 공표

▪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문서서명 요청

▪ 대표자(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 포함)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후단).

▪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명부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청구서나 그 사본
-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 포함)나 그 사본

> **Q.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주민에게 위임할 때 인원 제한이 있나요?**
>
> A.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수임자의 수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대표자는 여러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행정안전부, 『2025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40면 참조>

전자서명 요청

▪ 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7조제4항).

※ 위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다음의 서류를 게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공표사항	정보시스템 게시사항
√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 전자서명 방법 및 전자서명 취소 방법	√ 청구서나 그 사본 √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 포함)나 그 사본

서명요청 기간

▪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6개월

- 시·군·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 3개월

※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사람은 위의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주민조례청구의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는 다음의 선거기간은 제외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

- 대통령 선거: 23일
- 국회의원선거: 14일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 14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14일

※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위 선거기간에는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

▪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체류지
- 서명 연월일

※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그 주민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연원일을 적은 것으로 봅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후단).

▪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청구인명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시·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읍·면·동별로 작성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청구인명부 제출

▪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 포함)한 청구권자의 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

- 시·도: 10일

- 시·군·자치구: 5일

※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청구인명부 공표

▪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청구인명부 열람

▪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후단).

▪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15일 이상
시·군·자치구	10일 이상

Q. 청구인명부 보정 시 새로운 주민의 서명을 받아도 되나요?

A. 네. 서명 무효확인 및 이의신청 결정으로 청구인명부가 수정되어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50면 참조>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이 끝난 경우

▪ 지방의회의 의장은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후단).

▪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3.1.3. 주민조례청구 결과

주민조례청구 결과

주민청구조례안 지방의회에 발의

▪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지방의회의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및 의결

▪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대표자와 질의·답변을 포함)를 들을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폐기되지 않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Q. 지방의회에서 청구인대표자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고도 심의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청구인대표자의 설명 없이도 심의할 수 있으며, 청구인대표자의 회의 참석 및 설명은 지방의회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57면 참조>

▪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Q.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과정에서 수정의결할 수 있나요?

A.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의결 뿐만 아니라 부결도 가능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56면 참조>

4.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4.1. 주민감사청구권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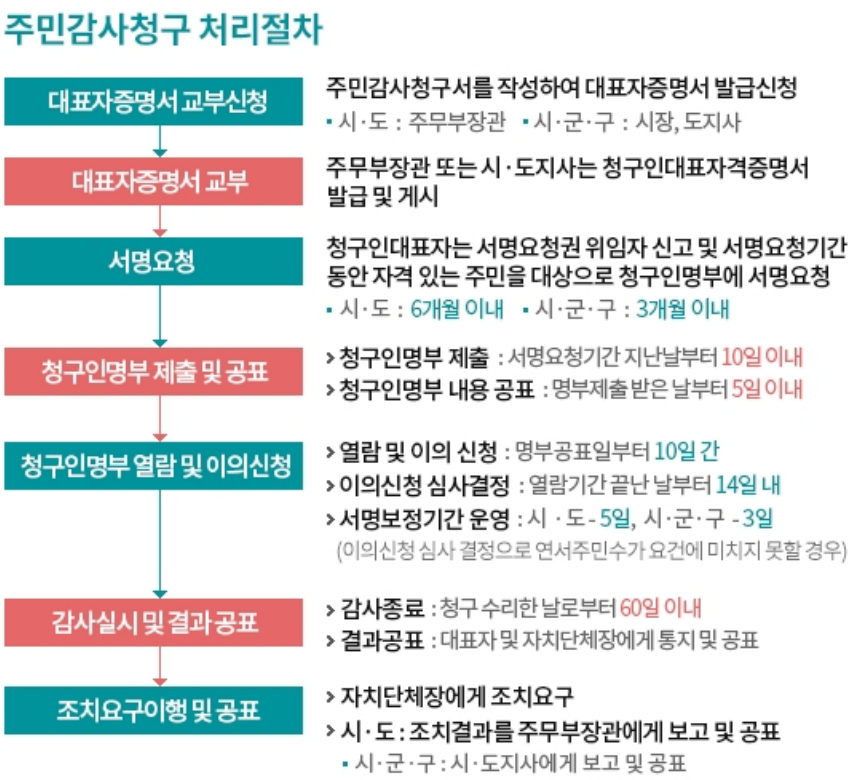
4.1.1. 주민감사청구권 알아보기

주민감사청구의 의의

주민감사청구의 개념

▪ “주민감사청구”란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을 말함. 이하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함)이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참조).

주민감사청구 처리절차



<출처: 주민e직접 홈페이지(https://www.juminegov.go.kr)-주민참여제도안내-주민감사청구안내 참조>

주민감사청구권자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시·군 및 자치구: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

- 선거권이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8조 참조).

  -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주민감사 청구요건

청구기간

-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3항).

청구 가능한 주민연서 수

-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역구분에 따른 18세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이 필요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 시·도: 300명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150명

    ※ 위 기준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원 수

청구제외 사유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2항).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1.2. 감사청구 절차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주민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18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서명요청

▪ 주민청구인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전자서명 요청

▪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게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전자서명 취소방법 포함)

서명요청 기간

▪ 서명요청기간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전단).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6개월
- 시·군·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 3개월

▪ 이 경우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요청기간 중 다음의 선거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후단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

- 대통령 선거: 23일
- 국회의원선거: 14일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 14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14일

※ 선거기간 중에는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음.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

▪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및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 서명 연월일

※ 다만,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위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하며, 제출하기 전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는 경우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항).

▪ 청구인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청구인명부 제출

▪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청구가능한 주민 연대 서명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지역	기간	제출대상
시·도	10일 이내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	5일 이내	시·도지사

※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명부 공표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청구인명부 열람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그 사유를 이의신청서에 적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 및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7항).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주민 수가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에게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참조).

- 시·도: 5일
- 시·군·자치구: 3일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에 주민의 연서 등 청구요건을 갖춘 때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8항).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1항).

4.1.3. 감사청구 결과

감사청구 결과

감사결과 공표

▪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 본문).

※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 단서).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0항).

이행결과 공표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2항).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3항).

4.2. 주민소송의 이해

4.2.1. 주민소송 알아보기

주민소송의 의의

주민소송의 개념

▪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71면).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73면).

※ 다만, 감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주민소송은 각하의 대상이나, 구두변론 종결시나 각하 전에 감사청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주민소송 진행 가능

Q. 주민소송은 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A. 주민감사청구 필수적 전치주의의 채택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나, 주민의 소송비용·시간 및 법원의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간이·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입니다.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에 비해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여 폭넓게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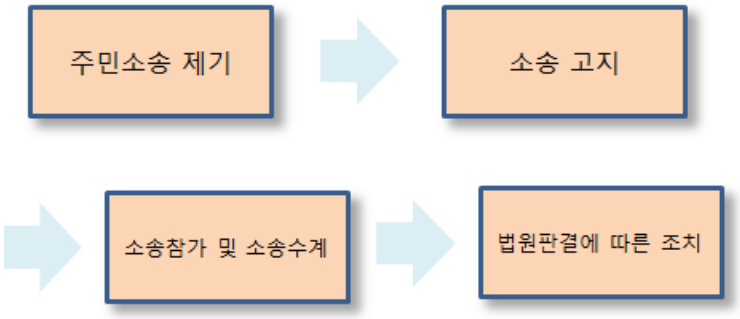
·위법성 판단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기관의 사전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 패소로 인해 부담하게 될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88면 참조>

주민소송 진행절차

주민소송의 진행절차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86면 참조>

4.2.2. 주민소송 제기권자 및 청구요건

주민소송 제기권자 등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 참고).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주민소송의 상대방

▪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함)을 상대방으로 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

주민소송 제기요건

제기사유 및 기간

▪ 주민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제4항).

소 제기사유	소 제기 기간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해당 60일이 끝난 날(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Q.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은 어떤 건가요?

A.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켜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 등을 납부한 주민입장에서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사실상 부당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92면 참조>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

-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2항·제3항).
  -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 ※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함)
    - ※ 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한 청구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1항).
- 위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5항).

소 제기 법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

▪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9항).

4.2.3. 주민소송의 진행

소송의 참가

소송의 참가자격

▪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3항).

소송의 중단·수계(受繼)

소송의 중단 및 포기 등

▪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어 소송이 중단(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6항·제8항).

※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봄

▪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4항·제15항).

※ 이 경우 법원은 허가를 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소의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봄)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소송의 수계(受繼)

▪ 법원은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8항 전단).

▪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소송이 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7항 전단).

▪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7항 후단).

> **Q. 주민소송시 당사자 합의로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
> A.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는 사인간의 민사소송과 같이 서로 양보하여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민소송의 확정판결은 주민전체에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집니다.
>
> 다만,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법적인 판단 착오 등으로 꼭 소송을 취하할 필요가 있는 경에는 이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허가를 얻으면 얼마든지 소송 중단이 가능합니다.
>
>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220면 참조>

4.2.4. 주민소송의 결과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3조제1항 본문).

※ 다만, 지급해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3조제2항 전단).

※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합니다.

변상명령

확정판결에 따른 변상명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4조 및 제22조제2항제4호 단서).

▹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60일 안에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승소비용 청구

승소한 주민의 보상청구

▪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7항 전단).

※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주민소환

5.1. 주민소환의 이해

5.1.1. 주민소환 알아보기

주민소환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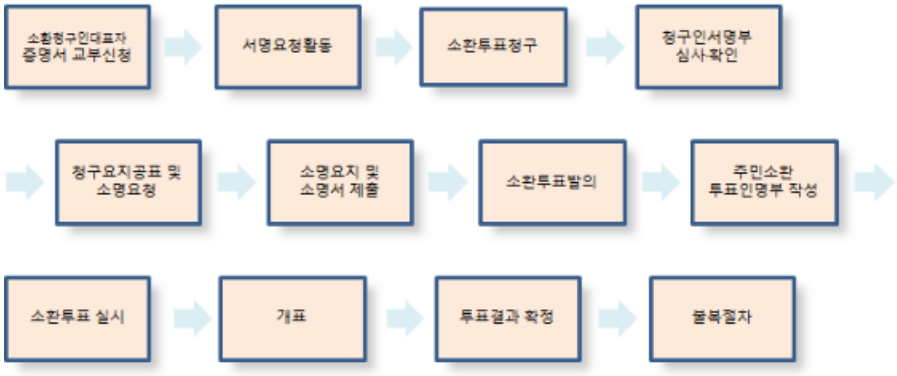
주민소환의 개념

-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주민소환투표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주민소환투표 절차도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22면 참조>

5.2. 주민소환투표 청구

5.2.1.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주민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청구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청구요건

청구요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함)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함):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
-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1,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서명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
-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이상 10/1,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15/100이상의 서명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함)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이상 10/1,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5.2.2. 주민소환 청구절차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는 청구인대표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및 청구인서명부 발급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7일 안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검인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서명요청활동

서명요청

-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다음의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 후 위임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서명요청 기간

-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진행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기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기획·주도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않은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서명요청활동 위반 시 제재

- 서명요청활동이 제한되는 기간 또는 서명요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서명요청활동을 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호).

> **Q. 거리에서 주민소환서명요청 활동을 할 때,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대’라는 문구가 게재된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나요?**
>
> A.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32조에 위반 되는 사항으로 적법한 주민소환서명요청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40면 참조>

소환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서명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읍·면·동별로 작성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서명

▪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 서명 연월일

▪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해야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함)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10일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이라 함): 5일

청구인명부 공표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함)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그 사유를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에 적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5항).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무효입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서명

√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해졌거나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해진 서명

√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행해진 서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소환 청구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보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시·도지사: 15일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10일

5.2.3. 청구결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결과

주민소환투표 가능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소명요청을 받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위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안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방의회의원은 정지기간 동안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의정활동보고서는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해야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

-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청구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5.3. 주민소환투표 실시

5.3.1. 주민소환투표운동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의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개념

▪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서).

-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방법

▪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다만, 주민투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될 경우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함)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제1항).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 해당 주민투표 대상자를 제외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다만,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상근직원 포함)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상근직원 포함)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사람과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다음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 신문광고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방법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함)

▪ 위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Q.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시기에 투표운동을 할 경우 법에 위반되나요?**
>
> A.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및 투표공고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중에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2조에 위반됩니다.
>
>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소환업무 매뉴얼』, 33면 참조>

5.3.2. 투표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

투표일

-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은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闕位)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 궐위(闕位): 관직 등의 자리가 빈 상태 또는 결원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와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주민투표
  -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제외)
  -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투표의 방법

주민소환투표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주민소환투표의 형식 및 실시구역

- 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같은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주민소환투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 대상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 대상

※ 투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선거권자(유권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5.4.1. 투표결과의 확정·이의신청

주민소환투표의 확정

주민소환투표의 확정절차

▪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권한을 대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지방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부의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의 효력

▪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주민소환투표결과 그 직을 상실한 사람은 그로 인해 실시하는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주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주민소환투표소송

▪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 필요)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이라 함):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사 “시·도지사”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에 따라 소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에 따라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안에 다음에 구분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시·도지사: 대법원

재투표 및 투표연기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안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

▪ 재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2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

※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이 제기되거나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해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6항).